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-311호

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

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업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5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허가취소 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9년 2월 14일
서울특별시

1. 처분대상

연번	상호	허가번호	소재지	대표자
1	어락	4-4-0201	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674(노량진동)	박*원

2. 처분의 내용 : 중도매업 허가취소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
- 3개월 연속 무실적(2018.7월~9월)

4. 처분근거 :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5조,
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[별표 4]

5. 처분일 : 2019.1.29.

6. 이의제기 안내

- 동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,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,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(행정심판법 제27조)을 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(행정소송법 제20조)을 제기할 수 있음.

7.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절차 안내

- 어락은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으므로, 도매시장 내 배정받은 점포 반납, 보증금 환급 등의 절차를 거쳐 중도매업 허가취소 처리됨.

(허가취소 절차관련 문의 : 수협노량진수산(주) 영업기획팀 ☎2254-8014)

8. 기타 문의처 :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(전화: 2133-5384)